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442호
- 나. 제 출 자 : 이소라 의원(찬성자 30명)
- 다. 제 출 일 : 2023년 1월 27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2월 13일

2. 제안이유

- 최근 청년의 탈모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 청년의 탈모 치료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방법(안 제5조, 제6조)
-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7조)
- 마. 환수 조치 등(안 제8조)
- 바. 업무의 위탁(안 제9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년 2월 16일 ~ 2월 20일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1조~안 제3조)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안 제3조~안 제10조)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내용방법,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 업무위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 조번호/조제목 | 주요 내용 |
|------------------|--|
| 제1조(목적) |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 |
| 제2조(정의) | "청년", "탈모" 등 용어 정의 |
| 제3조(시장의 책무) | 목적(제1조)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 제5조(지원대상) |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 규정 |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 청년 탈모 치료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 |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 타법령·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제8조(환수 조치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
| 제9조(업무의 위탁) | 청년 탈모 지원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금지 |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나. 제정 취지 검토

(1) 청년 지원의 근거 마련 측면

-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국내 탈모 환자수는 2015년부터 평균 1만 명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탈모 환자수는 2017년~2021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탈모 환자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탈모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연령대별 탈모 환자수 현황(2017년~2021년) >

(단위 : 명)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연평균증가율 (2017~2021) |
|--------|-------------------|-------------------|-------------------|--------------------|--------------------|-----------------------|
| 20~30대 | 92,626 (43.2%) | 97,207 (43.2%) | 99,148 (42.6%) | 100,116 (42.9%) | 100,271 (41.2%) | 2.0% |
| 40~50대 | 81,526 (38.1%) | 85,558 (38.1%) | 88,887 (38.2%) | 88,915 (38.1%) | 94,371 (38.7%) | 3.7% |

※ 괄호 안은 전체 탈모 환자수에서 해당 연령대 환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러나 20~30대 못지않게 중년 세대인 40~50대 탈모 환자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탈모가 비단 청년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2017년~2021년 동안 20~30대 보다 40~50대 탈모 환자수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탈모질환 본인부담금도 40~50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탈모 치료 지원 대상을 청년(19세~39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년 지원의 특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 탈모질환 1인당본인부담금 현황(2021년)¹⁾ >

| 연령대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 본인부담금 (천원) | 45.5 | 46.1 | 43.9 | 47.1 | 50.6 | 52.5 | 48.9 | 38.8 | 32.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

【 질병 빈도 】

- 특정 질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다빈도 질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질병 환자의 치료비부담(본인부담금)이 과도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외래환자 기준 다빈도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탈모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4개(L63~L66) 모두 20~30대 다빈도질병 순위 100위 밖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유전성 탈모증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드로젠성 탈모증도 20~30대 다빈도질병 순위 300위 밖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과목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이 탈모질환 대비 질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질병 소분류(3단상병) 통계 데이터 중 탈모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L63(원형탈모증), L64(안드로젠성 탈모증), L65(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L66(흉터성 탈모증)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계

- 오히려 다빈도질병 측면에서 보면 20~30대 우울질환(질병코드 F32, 우울에피소드)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 순위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보다 청년의 마음건강(또는 정신건강) 지원이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20~30대 다빈도질병 통계(2021년)²⁾ >

| 질병유형 | 질병코드 | 20대 | 30대 |
|------|------------------------------|------|--------|
| 탈모질환 | L63(원형탈모증) | 148위 | 161위 |
| | L64(안드로젠성 탈모증) ³⁾ | 332위 | 360위 |
| | L65(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 311위 | 390위 |
| | L66(흉터성 탈모증) | 424위 | 500위 밖 |
| 정신건강 | F32(우울에피소드) | 41위 | 59위 |
| | F41(기타 불안장애) | 69위 | 73위 |
| 피부질환 | L21(지루성 피부염) | 53위 | 65위 |
| | L20(아토피성 피부염) | 40위 | 72위 |
| | L70(여드름) | 111위 | 239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수요를 점검하여 지원을 확대하거나 다빈도질병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타 질병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외래환자 기준 다빈도질병 순위 집계

3) 유전적소인과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작용으로 발생, 원형탈모증과 달리 유전성 탈모증으로 분류됨

< 연령대별 우울 질환 환자수 추이(2017년~2021년)⁴⁾ >

| 연령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연평균증가율 (2017~2021) |
|-------|---------|---------|---------|---------|---------|-----------------------|
| 계 | 614,379 | 684,690 | 728,629 | 771,596 | 843,667 | 8.3% |
| 10대미만 | 1,125 | 1,183 | 1,413 | 1,322 | 1,755 | 11.8% |
| 10대 | 28,503 | 41,014 | 46,165 | 47,017 | 54,658 | 17.7% |
| 20대 | 71,594 | 92,903 | 112,043 | 140,084 | 165,787 | 23.4% |
| 30대 | 77,026 | 87,180 | 98,120 | 110,608 | 130,158 | 14.0% |
| 40대 | 89,379 | 97,123 | 102,981 | 107,312 | 119,296 | 7.5% |
| 50대 | 111,604 | 115,949 | 116,999 | 114,639 | 116,450 | 1.1% |
| 60대 | 112,168 | 118,403 | 120,003 | 122,404 | 129,608 | 3.7% |
| 70대 | 101,965 | 107,123 | 106,592 | 104,050 | 103,257 | 0.3% |
| 80대이상 | 44,875 | 50,158 | 52,366 | 54,443 | 56,287 | 5.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각 질병 환자의 치료비부담(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20~30대의 탈모질환 본인부담금은 1인당 4만 4천 원~4만 7천 원인데 반해 우울질환 본인부담금은 1인당 12만 원~13만 4천 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우울질환의 치료비부담이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청년의 탈모질환이 타 질병대비 치료비부담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사회 청년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비단 탈모질환 외에도 청년들의 건강챙김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질병 소분류(3단상병) 통계 데이터 중 20~30대 다빈도질병 상위에 속하는 우울질환 질병코드 F32(우울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계

< 증상별 환자수 및 1인당본인부담금 현황(2021년)⁵⁾ >

| 연령대 | 환자수(명) | | 본인부담금(천원) | |
|-------|---------|---------|-----------|-------|
| | 탈모질환 | 우울질환 | 탈모질환 | 우울질환 |
| 계 | 247,419 | 843,667 | 48.8 | 118.1 |
| 10대미만 | 5,403 | 1,755 | 45.5 | 84.9 |
| 10대 | 17,813 | 54,658 | 46.1 | 148.3 |
| 20대 | 51,465 | 165,787 | 43.9 | 134.2 |
| 30대 | 54,597 | 130,158 | 47.1 | 119.8 |
| 40대 | 53,942 | 119,296 | 50.6 | 109.0 |
| 50대 | 41,883 | 116,450 | 52.5 | 100.9 |
| 60대 | 20,702 | 129,608 | 48.9 | 101.6 |
| 70대 | 5,492 | 103,257 | 38.8 | 99.3 |
| 80대이상 | 874 | 56,287 | 32.1 | 95.6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5) 질병 소분류(3단상병) 통계 데이터 중 탈모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L63(원형탈모증), L64(안드로젠성 탈모증), L65(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L66(흉터성 탈모증)과 우울질환 질병코드 F32(우울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계

【 정책 선호도 】

-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정책 선호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난 2020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 정책 수요조사⁶⁾에 따르면,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청년주거안심제’가 단기·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음
 - 단기 최우선 추진과제: 청년일자리보장제(30.3%), 청년주거안심제(24.9%), 청년 첫 출발 지원(10.7%)
 - 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 청년일자리보장제(27.4%), 청년주거안심제(22.9%), 청년 건강활력 지원(11.6%)
- 같은 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청년 정책 중요도 분석 결과⁷⁾,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청년의 정책 참여가 1순위, 현금·건강검진지원과 같은 생활지원정책은 2순위 과제로 도출되었음.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서울시 청년 정책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안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청년 건강활력 지원’ 사업은 고립청년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우울극복, 커뮤니티 지원 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의 가용 자원(예산·인력 등)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탈모 치료 지원은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주요 청년 정책 대비 추진 필요

6)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서울연구원, 2020

7)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정책의제 중요도와 우선순위 >

(단위 : 점, 10점 척도)

| 영역 | 의제 | 중요도 (평균, 점) | 시급성 우선순위(1~8위) | |
|------|------------------|----------------|----------------|-----|
| | | | 단기 | 중장기 |
| 일자리 | 청년 일자리보장제 | 7.56 | 1 | 1 |
| |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 7.36 | 4 | 4 |
| 살자리 | 청년 주거안심제 | 7.75 | 2 | 2 |
| 설자리 | 청년 첫출발 지원 | 7.31 | 3 | 5 |
| | 청년 건강활력 지원 | 7.09 | 5 | 3 |
| 펼칠자리 |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참여 증진 | 6.93 | 7 | 7 |
| | 청년 문화향유권 증진 | 6.65 | 8 | 8 |
| 다음자리 | 청년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 | 6.89 | 6 | 6 |

자료 : 서울연구원(2020)

(3) 정책 관련 여론동향 측면

- 이번 제정조례안은 발의 이후 현재('23.2.25. 기준)까지 26건의 관련 기사⁸⁾가 나오는 등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정책을 제도화 했을 때의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 관련 여론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유사 정책 사례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공약 중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S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탈모 치

8) 기간: '23.2.16.~2.25.

검색 키워드: 서울시 청년 탈모

뉴스 배포현황: 15개 언론사 26개 뉴스 (자료: 빅카인즈)

료 건강보험 지원' 찬성 여론은 37%, 반대 여론은 55%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 반대 여론이 우세하였음(붙임3 참조)

- 현재까지 청년 탈모 지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⁹⁾에 지원 반대의견이 다수 제안되었고 관련 기사와 댓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찬성: 탈모는 사회적 질병, 탈모인구 증가, 탈모 치료비 부담완화 要
 - 반대: 타질환과의 형평성, 성별·세대갈등 우려, 기본복지 강화가 우선, 지속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
- 현 시점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책 수혜 대상자인 20~30대 청년은 물론 전 연령대 시민들이 정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의제를 공론화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종합(2022.1월) >

| 발표기관 | 찬성(%) | 반대(%) | 모름(%) |
|--------------|-------|-------|-------|
| SBS(넥스트리서치) | 41.8 | 48.7 | 9.5 |
| JTBC(글로벌리서치) | 48.3 | 45.0 | 6.7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43.1 | 43.8 | 13.1 |

자료 : 미디어 발표자료 종합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찬반 의견(2023.2월) >

|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모 치료에 80만원 이상 들었는데, 탈모인으로서 필요한 정책이다”, “탈모도 질병의 일종이다. 탈모인 대부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2.19. 조선일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다 성형 비용, 여드름 흉터 비용도 지원해주겠다”, “나는 이발비 지원이 필요하다” (2.19. 조선일보) •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청년 탈모 치료 지원) 말고 건강보험료를 줄이 |

9) 입법예고 기간 : 2023년 2월 16일 ~ 2월 20일 (찬성의견 4건, 반대의견 1건)

|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약국에 가면 탈모 환자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많은데 나이대가 대부분 20~30대이다. 탈모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면 꼭 지원받고 싶다" (2.22. 머니투데이) • "탈모는 자존감과 직결되며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탈모 치료 비용 지원 조례안이 나올 정도라는 건 그만큼 탈모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2.22. 머니투데이) • "탈모는 개인이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약값의 일부라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2.23. 한국일보) • "탈모 치료 지원은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탈모를 앓으면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탈모를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간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다" (2.25. 아시아경제) | <p>는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법이다" (2.19. 헤럴드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치료를 지원한다면 치주질환이나 다른 과로성 질환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탈모인 중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자칫 성차별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2.20. 경향신문) • "탈모 환자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세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면 좋겠다"(2.22. 머니투데이) • 노혜련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탈모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사회 복지 문제로 접근할 질병이 아니다. 교육과 취업, 주거 등 기본적 복지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2.23. 한국일보) •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탈모증 진단 환자 수가 늘면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2.25. 아시아경제) |

자료 : 관련 뉴스 종합

(4) 정책 추진부서의 적합성 측면

- 이번 제정조례안이 목적인 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소관부서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시 시너지 제고가 가능한지, 추후 지원 대상 확대 시에도 무리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는 아동청년과에서 경구용 치료 약제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필요 시 맞춤형 건강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이 세간의 우려처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모 치료 지원에 수반되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와 더불어 치료 결과 추적이 필요하므로, 보령시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이번 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소관부서로 ‘미래청년기획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을 19세~39세 청년으로 한정할 뿐 사업의 기본 성격은 질병 치료 지원에 해당하므로 보건·의료 부문의 전문성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 탈모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 연번 | 지자체 (소관부서) | 추진현황 |
|----|---|--|
| 1 | 서울시 성동구 (아동청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례 명 :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22.5.6. 시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경구용 치료 약제비에 한해 본인부담금 50%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총 800명 지원) · 지원대상 :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성 모발손실 · 추진현황 : 추진계획 수립('23.1.), 신청자 접수('23.3.2~11.30.) · 사업예산 : 166백만원 |
| 2 | 대구광역시 ¹⁰⁾ (청년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지원 조례('22.12.30. 시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고,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 · 추진현황 : '23년 예산 미편성, 사업계획 미수립 |
| 3 |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례 명 :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23.1.1. 시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증 진단을 받고,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49세 이하 시민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생애 1회) (신청년도 2년 이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신청자 중 금연·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지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다. 조례안 검토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통해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해소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근거 마련을 기술하고 있고,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됨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청년”과 “탈모”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 청년 정책과 관련한 “청년”에 관한 정의는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함.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별법」 등은 통계청 기준을 따라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며, 「청년 기본 조례」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서울 청년의회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

10) 대구광역시는 '23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소관부서 변경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청년기본법」 보다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 운영하기도 하는데, 서울시 등 120개 지방자치단체(전체의 49.7%)는 청년을 18세·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¹¹⁾하고 있음. 이번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대구광역시의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 청년 정책 중 재정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수당’은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비 지원’은 19세~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성격을 띠고 있는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법·제도 별 청년 연령 범위 현황 >

| | | | | |
|------|--------------|--------------|----------|--------------|
| 법·제도 | 청년기본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조세제한 특례법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 연령 | 19세~34세 | 15세~29세 | 15세~29세 | 15세~34세 |
| 법·제도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 서울 청년의회 | 각 정당 청년당원 |
| 연령 | 19세~39세 | 19세~39세 | 19세~39세 | 19세~45세 |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별 청년 연령 범위 >

| | | | |
|----|-----------------------------------|------------------------------|-------------------------------------|
| 조례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정의 |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1. “40대 이하”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11)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청년 연령 범위 현황,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사(자료: 국무조정실, '22.7월) 18-19세~39세(49.7%), 18-19세~34세(18.9%), 18-19세~49세(10.2%), 18-19세~45세(9.0%), 15세~39세(4.9%), 기타(7.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
- 이번 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조례와 달리 '시장의 책무'를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됨. 또한, 보령시 조례가 '시장의 책무'를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이번 제정조례안은 훈시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이 2020년에 수립한 5년 단위 ‘2025 서울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년 수립되는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신규 추가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은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안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의 정책 방향,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함. 따라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는 의료기관 지정, 관리 부문의 전문성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6조)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되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한해 본인 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구광역시와 서울시 성동구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에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령시는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소관 부서가 각각 청년정책과와 아동청년과인데 반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령시의 소관 부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임을 고려할 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이번 제정조례안의 소관 부서 역시 보령시의 사례와 같이 보건·의료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 이번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서울시 성동구 사례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프로페시아의 화학명) 경구복용, 미녹시딜의 국소 도포, 모발이식 수술 등 세 가지 밖에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탈모질환 의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탈모질환은 여러 치료방식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며, ▲경구용 치료제 구매만 지원할 경우 탈모환자의 약물 과다복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한해 본인 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의료 전문가 의견 (허창훈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대한모발학회 국제관계이사)

- 성인 남성의 50% 이상이 탈모 증상을 겪고 있고, 탈모 치료방법은 ▲경구용 약 복용, ▲약물 도포,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함
- 탈모의 원인이 복합적임에 따라 여러 치료방식을 병행해야 효과적임에도, 경구용 약 치료비만 지원할 경우 탈모환자의 약물 과다복용 초래가 우려됨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별 지원내용 및 방법 >

| 조례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 지원 내용 및 방법 | <p>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p> <p>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p> <p>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p> <p>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6) 중복지원의 금지 및 환수 조치 등(안 제7조 및 안 제8조)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5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탈모 치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 안 제7조는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대상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폭넓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원내용을 경구용 치료제로 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외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치료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7) 업무의 위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9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료비 지원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및 질병코드 관리 등을 보건소 등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

기관에 업무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또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안 제10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 및 질병코드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조례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¹²⁾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폭넓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¹³⁾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8) 시행규칙

- 이번 제정조례안에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안 제 6조제3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 수립 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13)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라. 종합 의견

- 이번 제정조례안은 탈모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30대가 국내 탈모환자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탈모질환은 비단 청년세대만 고통받는 질병이 아니며 탈모환자에서 40~50대 중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하겠음
- 다빈도질병 측면에서 볼 때 우울질환, 피부질환 등 탈모질환 보다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이 다수 확인되므로, 청년 질병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한정된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을 청년일자리, 청년주거안심, 청년마음건강 등 정책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이번 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소관부서로 '미래청년기획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안 제6조에 따라 실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의 사례처럼 보건·의료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 이번 제정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청년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현 시점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에 앞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최근 5년간 탈모질환 진료인원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계 |
|--------|----|--------------|--------------|--------------|--------------|--------------|---------------|
| 계 | 계 | 214,228 | 224,833 | 232,671 | 233,459 | 243,609 | 1,148,800 |
| | 남자 | 119,145 | 126,477 | 132,401 | 133,170 | 135,845 | 647,038 |
| | 여자 | 95,083 | 98,356 | 100,270 | 100,289 | 107,764 | 501,762 |
| 10대 미만 | 계 | 5,280(2.5) | 5,019(2.2) | 5,115(2.2) | 3,974(1.7) | 4,811(2.0) | 24,199(2.1) |
| | 남자 | 2,121(1.8) | 1,971(1.6) | 2,020(1.5) | 1,737(1.3) | 1,885(1.4) | 9,734(1.5) |
| | 여자 | 3,159(3.3) | 3,048(3.1) | 3,095(3.1) | 22,37(2.2) | 2,926(2.7) | 14,465(2.9) |
| 10대 | 계 | 16,196(7.6) | 16,150(7.2) | 16,369(7.0) | 15,992(6.9) | 16,053(6.6) | 24,199(7.0) |
| | 남자 | 9,201(7.7) | 9,576(7.6) | 9,692(7.3) | 9,137(6.9) | 9,244(6.8) | 9,734(7.2) |
| | 여자 | 6,995(7.4) | 6,574(6.7) | 6,677(6.7) | 6,855(6.8) | 6,809(6.3) | 14,465(6.8) |
| 20대 | 계 | 42,265(19.7) | 44,962(20.0) | 46,998(20.2) | 48,306(20.7) | 47,549(19.5) | 230,080(20.0) |
| | 남자 | 25,520(21.4) | 27,759(21.9) | 29,210(22.1) | 29,615(22.2) | 28,435(20.9) | 140,539(21.7) |
| | 여자 | 16,745(17.6) | 17,203(17.5) | 17,788(17.7) | 18,691(18.6) | 19,114(17.7) | 89,541(17.8) |
| 30대 | 계 | 50,361(23.5) | 52,245(23.2) | 52,150(22.4) | 51,810(22.2) | 52,722(21.6) | 259,288(22.6) |
| | 남자 | 32,091(26.9) | 33,654(26.6) | 34,163(25.8) | 33,951(25.5) | 34,128(25.1) | 167,987(26.0) |
| | 여자 | 18,270(19.2) | 18,591(18.9) | 17,987(17.9) | 17,859(17.8) | 18,594(17.3) | 91,301(18.2) |
| 40대 | 계 | 47,457(22.2) | 48,888(21.7) | 50,482(21.7) | 50,102(21.5) | 52,580(21.6) | 249,509(21.7) |
| | 남자 | 26,646(22.4) | 27,685(21.9) | 29,309(22.1) | 29,639(22.3) | 30,824(22.7) | 144,103(22.3) |
| | 여자 | 20,811(21.9) | 21,203(21.6) | 21,173(21.1) | 20,463(20.4) | 21,756(20.2) | 105,406(21.0) |
| 50대 | 계 | 34,069(15.9) | 36,670(16.3) | 38,405(16.5) | 38,813(16.6) | 41,791(17.2) | 189,748(16.5) |
| | 남자 | 16,051(13.5) | 17,438(13.8) | 18,684(14.1) | 19,203(14.4) | 20,585(15.2) | 91,961(14.2) |
| | 여자 | 18,018(18.9) | 19,232(19.6) | 19,721(19.7) | 19,610(19.6) | 21,206(19.7) | 97,787(19.5) |
| 60대 | 계 | 13,859(6.5) | 15,595(6.9) | 17,440(7.5) | 18,511(7.9) | 21,412(8.8) | 86,817(7.6) |
| | 남자 | 5,900(5.0) | 6,558(5.2) | 7,302(5.5) | 7,850(5.9) | 8,664(6.4) | 36,274(5.6) |
| | 여자 | 7,959(8.4) | 9,037(9.2) | 10,138(10.1) | 10,661(10.6) | 12,748(11.8) | 50,543(10.1) |
| 70대 | 계 | 4,037(1.9) | 4,572(2.0) | 4,921(2.1) | 5,008(2.1) | 5,694(2.3) | 24,232(2.1) |
| | 남자 | 1,372(1.2) | 1,601(1.3) | 1,767(1.3) | 1,742(1.3) | 1,757(1.3) | 8,239(1.3) |
| | 여자 | 2,665(2.8) | 2,971(3.0) | 3,154(3.1) | 3,266(3.3) | 3,937(3.7) | 15,993(3.2) |
| 80대 이상 | 계 | 704(0.3) | 732(0.3) | 791(0.3) | 943(0.4) | 997(0.4) | 4,167(0.4) |
| | 남자 | 243(0.2) | 235(0.2) | 254(0.2) | 296(0.2) | 323(0.2) | 1,351(0.2) |
| | 여자 | 461(0.5) | 497(0.5) | 537(0.5) | 647(0.6) | 674(0.6) | 2,816(0.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근 5년간 탈모질환 진료비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계 |
|----|------------|------------|------------|------------|------------|-------------|
| 계 | 28,649,792 | 32,367,179 | 36,180,561 | 38,788,977 | 41,997,798 | 177,984,306 |
| 남자 | 15,727,647 | 17,896,679 | 20,142,689 | 21,725,270 | 23,171,721 | 98,664,006 |
| 여자 | 12,922,146 | 14,470,499 | 16,037,871 | 17,063,707 | 18,826,077 | 79,320,30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번 | 지방자치단체 | 조례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2022.12.30. | 2022.12.30. |
|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2022.05.06. | 2022.05.06. |
| 3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2022.12.20. | 2022.12.20. |

| 조문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 제1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이 탈모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0대 이하"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비 지원"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
| 제3조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 조문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 |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
| 제4조 |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p> |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 등으로 한다.</p> |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 2.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세부 지원 방안 3. 그 밖에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 제5조 | <p>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p> <p>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p> <p>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40대 이하로 한다.</p> |

| 조문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 제6조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7조 | 제7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 제8조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조문 |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
| 제9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 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10조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구 분 | 조사 완료 사례수(명) | 가중값 적용 사례수(명) | 찬성(%) | 반대(%) | 모름/무응답(%) | |
|-----|-----------------|------------------|-------|-------|-----------|------|
| 전 체 | (1,004) | (1,004) | 41.8 | 48.7 | 9.5 | |
| 성별 | 남자 | (504) | (498) | 47.2 | 44.5 | 8.2 |
| | 여자 | (500) | (506) | 36.5 | 52.7 | 10.8 |
| 연령별 | 18~29세 | (173) | (173) | 38.4 | 46.0 | 15.5 |
| | 30대 | (142) | (152) | 43.0 | 45.0 | 12.1 |
| | 40대 | (186) | (187) | 51.4 | 40.4 | 8.2 |
| | 50대 | (204) | (195) | 44.2 | 51.1 | 4.6 |
| | 60대 이상 | (299) | (297) | 35.6 | 55.6 | 8.7 |
| 권역별 | 서울 | (194) | (189) | 36.9 | 54.7 | 8.4 |
| | 인천/경기 | (317) | (315) | 41.8 | 50.5 | 7.7 |
| | 대전/충청/세종 | (113) | (108) | 43.9 | 47.8 | 8.3 |
| | 광주/전라 | (97) | (98) | 64.5 | 22.8 | 12.7 |
| | 대구/경북 | (95) | (98) | 35.8 | 55.9 | 8.3 |
| | 부산/울산/경남 | (145) | (152) | 36.1 | 49.4 | 14.5 |
| | 강원/제주 | (43) | (44) | 40.9 | 50.3 | 8.8 |

- 조사 의뢰 : SBS
-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 조사 일시 : 2022년 1월 15일~16일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